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94

발의연월일: 2020. 8. 20.

발 의 자 : 임오경·서삼석·장철민

김영주 · 전용기 · 김경만

박성준 • 윤후덕 • 김민철

이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진흥기본 계획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·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 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"코로나19")로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, 모든 분야의 스포 츠산업들 또한 무관중경기 등의 예방대책을 시행중이며 그로인해 스 포츠산업 전반의 수익이 급감하는 침체기에 접어들었음. 이렇듯 스포 츠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해, 기본적인 대응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스포츠산업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스포츠산업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·기간별 세부시행계획에 포함시켜 스포츠산업에서의 유행성 감염병 대비에

앞장서고 경쟁력있는 스포츠산업 기반조성에 힘쓰려는 것임(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스포츠산업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(생	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8. 스포츠산업의 감염병에 대한
	<u>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</u>
	<u>사항</u>
<u>8.</u> (생 략)	<u>9.</u> (현행 제8호와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